

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9. 4. 2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9. 4. 3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0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1999. 4. 1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청소사업소장 이영기)

가. 제안이유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규모 이상의 음식점, 목욕탕, 백화점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1회 용품 사용 자체 등의 실천사항이 법에서 권고를 강제규정으로 개정되었기 조례상의 권고사항을 삭제(안 제4조)

○ 규제완화 차원에서 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를 다음의 경우에 한하도록 함(안 제8조)

1.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 자체 등에 관한 사항의 실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에 관한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조례의 시행일은 법률에 맞추어 1999년 8월 9일로 함.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146 호
의결년월일	99. 4. 15 (제70회)

제출년월일 : 1999. 4. 2

제출자 : 부천시장

제안이유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규모 이상의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1회용품 사용 자제 등의 실천사항이 법에서 권고에서 강제규정으로 개정되었기 조례상의 권고조항을 삭제(안 제4조)

- 규제완화 차원에서 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를 다음의 경우에 한하도록 함(안 제8조)

1.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 자제 등에 관한 사항의 실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에 관한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조례의 시행일은 법률에 맞추어 1999년 8월 9일로 함.

첨부 : 1. 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 내지 제7조를 제4조 내지 제6조로 한다.

제8조를 제7조로 하여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를 제8조로 한다.

① 시장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또는 폐기물배출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 자제 등에 관한 사항의 실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에 관한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4조(1회용품 등 사용 자제를 위한 지도) ①시장은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대상사업자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혁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u> <u>②시장은 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자원재활용 촉진을 강구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u> <u>제5조~제7조(생략)</u> <u>제8조(보고 및 검사 등) ①시장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u> <u>1.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u> <u>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 배출자</u>	<u>(삭제)</u> <u>제4조~제6조(현행 제5조 내지 제7조와 같음)</u> <u>제7조(보고 및 검사 등) ①시장은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또는 폐기물배출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u> <u>1.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 자제 등에 관한 사항의 실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u>

	<p><u>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배출자 의 재활용에 관한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u></p> <p>②(현행과 같음)</p> <p><u>제8조(시행규칙) (현행 제9조와 같음)</u></p>
②(생략) <u>제9조(시행규칙) (생략)</u>	